

부천테크노파크3단지 주차장 관리규정

제1조 [목적]

이 규정은 당 단지의 관리규약 제55조[주차장의 운영]에 의거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대한 기본 방침과 세부절차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편리하고 질서 있는 주차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적용과 대상]

이 규정은 부천테크노파크3단지의 주차장(이하"주차장"이라고 한다.)과 주차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.

제3조 [주차권의 종류]

① 정기주차권 (무료)

규정 제4조에 따라 주차장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료주차차량을 말한다.

② 월정주차권 (유료)

규정 제4조에 따라 주차장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배정받아 월정주차요금을 납부한 차량을 말한다.

③ 지정주차권 (무료)

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자리에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.

④ 일반주차권 (유료)

시간제 또는 1일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주차하는 모든 차량을 말한다.

제4조 [주차권의 배정]

① 공장동

분양면적 77평을 기준으로 정기주차권 2대, 월정주차권 1대를 배정한다.

② 상가동

분양면적 25.67평을 기준으로 정기주차권 1대를 배정하되, 남은 면적의 배정대수는 반올림한다.

③ 기숙사

1호당 월정주차권료의 1/2을 부담할 경우 월정주차권 1대를 배정하며, 기숙사만의 분양면적을 합산하더라도 지정주차권과 정기주차권을 배정 받을 수 없다.

④ 정기주차권 2대를 포기할 경우 지정주차권 1대를 배정한다.

- ⑤ 공장동과 상가동, 기숙사의 분양면적은 합산하여 주차권을 배정 받을 수 있다.
- ⑥ 주차권은 차량 수용능력에 따라 제한 발급될 수 있다.
- ⑦ 주차권은 입주사대표의 날인을 받아 입주사지원본부에 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차량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서면 통보하고 재배정 받아야 한다.

제5조 [주차요금]

- ① 월정주차권은 월38,500원(부가세포함)으로 한다.
- ② 1일권 주차요금은 24시간 단위 7,000원(부가세포함)으로 하며, 출차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.(2018.7.1.개정)
- ③ 시간제 주차요금은 30분 단위 500원(부가세포함)으로 하며, 최초1시간은 무료로 한다.
- ④ 입주사지원본부는 주차권을 발행 판매할 수 있다.
- ⑤ 월정주차권의 주차료는 전월 말일까지 선납하여야 하며 환불하는 때에는 당해 월의 주차료는 공제한다.
- ⑥ 주차요금은 차량이 출차 할 때 요금정산소에서 징수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
 - 1. 공공기관 등에서 공무로 방문한 차량
 - 2. 입주사지원본부의 요청에 의해 건물의 보수 등을 위한 작업차량
 - 3. 기타 응급을 요하는 차량
- ⑦ 주차요금 변경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상 또는 인하를 입주사대표회의에서 결의한다.

제6조 [주차관리의 기본방침]

주차관리는 입주사등의 편익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며 방문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한다.

제7조 [입주사지원본부의 의무]

- ① 주차장 전반에 관한 계획, 조정, 통제 및 확인에 대한 관리
- ② 주차장 제 시설물의 보호, 유지에 관한 관리
- ③ 주차관리요원의 교육, 훈련 및 근무상태에 관한 관리
- ④ 주차요금의 계산, 기장, 배분 및 기타정산에 관한사항의 관리

제8조 [주차관리요원]

입주사지원본부는 주차장 사용차량의 질서유지, 통제, 안내, 경비 등을 원활히 하기위해 주차장에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제9조 [주차장 사용시간]

- ① 주차장 출입구(남문,서문)는 24시간 개방한다.(2018.9.18.개정)
- ② 입주사지원본부는 주차장의 보수 등 관리상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금할 수 있다.

제10조 [준수사항]

단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10km/h이하로 서행하여야하며 추월행위를 할 수 없다.
2.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반입할 수 없다.
3. 긴급사항 이외에는 경적을 사용할 수 없다
4. 주차 시에는 주차면 안에 주차하여야하며 타 차량의 주차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.
5. 수리, 급유, 물세차 등 공해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고장 차량을 방치할 수 없다.
6. 차량손실, 시설물파손 등은 입주사지원본부에 필히 신고 하여야한다.
7. 입주사지원본부는 주차관리를 위하여 주차권을 등록한 차량의 앞유리 좌측에 주차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 [주차 및 출차의 제한]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차 또는 출차를 제한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.

1. 주차장의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오손한 차량
2. 차량에 인화물 또는 폭발물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
3.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
4. 관리규약 제97조 (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) 6항에 의거하여, 관리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주사등의 지정 및 정기, 월정주차권의 배정을 납부마감 2일 후부터 미납관리비를 납부할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.
5. 다른 지정주차권 지정장소에 3회 이상 주차한 차량
6. 주차권 발급의 허위 사실 또는 부정사용이 있는 차량

제12조 [사고의 신고의무]

주차장내에서의 차량의 충돌, 화재발생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나 주차장의 시설 및 차량 등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 및 목격자는 입주사지원본부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 [손해배상]

주차장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인명 또는 주차장 시설 및 차량 등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4조 [면책사항]

아래의 사항이 발생 시 주차장 관리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
- ①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적재물 또는 부착물에 대한 화재, 도난, 주차 관리자가 알지 못한 접촉사고나 차량의 손상, 기타의 손해
- ②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차량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
- ③ 귀중품을 별도로 보관시키지 않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물품의 도난이나 멸실, 훼손 등의 손해
- ④ 지진, 풍수해, 전쟁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

제15조 [주차요금의 관리 및 사용]

- ① 주차료는 익일 정산하여야하며 입주사지원본부에서 별도계좌로 관리한다.
- ② 주차료는 매월말일 결산하여 입주사대표회의에 보고한다.
- ③ 주차료의 이익발생금액은 관리외수입으로 적립하고 입주사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차시설의개선, 보수 및 입주사의 편익을 위하여 사용한다.

제16조 [주차관리업무의 위임]

입주사대표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주차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자)

이 규정은 2004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규약 제21조(입주사대표회의 의결 사항)에 따른다.

제3조

공실에 배정되는 지정주차장의 사용은 입주사지원본부에 위임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자)

입주사대표회의 의결 즉시 시행한다. (제81차 입주사대표회의 2011.05.12.)

제2조 (적용례)

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변경된 구분소유자(임차인포함)부터 적용한다.

② 상가, 기숙사의 정기주차, 월정주차, 지정주차는 별첨 주차배정조건표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(개정)

- ① 2012년 07월 01일 (제94차 입주사대표회의 의결)
- ② 2017년 05월 16일 (제154차 입주사대표회의 의결)
- ③ 2017년 05월 16일 (제154차 입주사대표회의 의결)
- ④ 2018년 05월 15일 (제166차 입주사대표회의 의결)
- ⑤ 2018년 09월 18일 (제170차 입주사대표회의 의결)

[별첨] 주차배정(상가, 기숙사) 조건표 (77평/3=대당 25.67평)

호 별	면 적(평)	면적/25.67평	배정대수		비 고
			정기주차(무료)	월정주차(금액)	
상가 101호	32.07	1.25대	1		
102	30.63	1.19	1		
103	30.63	1.19	1		
104	30.63	1.19	1		
105	30.63	1.19	1		
106	28.92	1.13	1		
107	29.81	1.16	1		
108	46.20	1.80	2		
109	36.58	1.43	1		
110	37.72	1.47	1		
111	38.49	1.50	1		
112	38.50	1.50	1		
113	37.72	1.47	1		
114	38.52	1.50	1		
201	35.31	1.38	1		
202	67.14	2.62	2		
203	67.24	2.62	2		
204	63.41	2.47	2		
205	49.73	1.94	2		
206	49.73	1.94	2		
207	49.63	1.93	2		
208	84.53	3.29	3		
209	42.80	1.67	2		
B101	687.92	무료 17.86	18	9대(315,000원)	77평 기준
		유료 8.93			
기숙사	19.27평, 20.16평, 20.21평, 20.28평			각1대(17,500원)	

가210~516	20.32평	
----------	--------	--